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3. 6. 18(화), 13:3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동욱, 김창준, 박경립, 이강근, 장석하,
정명섭, 정혜린, 최성은, 홍승재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 심의 33건 : 원안가결 14건, 조건부가결 11건, 보류 1건, 부결 7건
- 검토 3건 : 조건부가결 1건, 부결 2건
- 보고 2건 : 원안접수 2건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경주 쾌릉석상 및 석주일팔 지정명칭 변경	공개
2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2차)	공개
3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박○○, 허가사항 변경(2차))	공개
4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김○○, 2차)	공개
5	경주 울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6	임실 진구사지 석등 주변 불상 이전 및 보호각 신축	공개
7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주변 화장실 신축	공개
8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부지 내 도로 개설	공개
9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한천고향의강 정비사업	공개
10	예천 동본리 삼층석탑 주변 한천고향의강 정비사업	공개
11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다세대건물 신축	공개
12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공개
13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4	부안 개암사 대웅전 주변 숙박시설 용도변경	공개
15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금장실 개축 및 주변정비	공개
16	청도 석빙고 주변 청도읍성 내 관아 건물 건립	공개
17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8	서울 흥인지문 주변 숙박시설 건립(허가사항 변경)	공개
19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정밀안전진단	공개
20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건립	공개
21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주택단지 조성(2차)	공개
22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물류창고 건립(2차)	공개

23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전○○, 2차)	공개
24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농업용 창고(하우스) 건립(이○○)	공개
25	순천 정혜사 대응전 주변 종각건립	공개
26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건립	공개
27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건립	공개
28	기장 장안사 대응전 주변 불광산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공개
29	밀양 송진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도로·교량 개설(2차)	공개
30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동창기미 만세공원 재조성 사업	공개
31	충주 고구려비 주변 김치공장 관련 저온창고 건립	공개
32	합천 반야사지 원경왕사비 이건 사업	공개
33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공개
【검토사항】		
34	경주 양동 향단 주변정비사업(안채 복원) 검토	공개
35	서울 승례문 장소사용 심의 검토(전 국민 참여 독도사랑 프로젝트 플래시몹 촬영)	공개
36	서울 승례문 장소사용 심의 검토(승례문 아트워크 프로젝트 촬영)	공개
【보고사항】		
37	2013년도 추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보고	공개
38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긴급보존사업 추진계획 보고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3-06-001

1. 경주 패릉석상 및 석주일괄 지정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패릉석상 및 석주일괄」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패릉석상 및 석주일괄」 지정명칭을 사적 「경주 원성왕릉」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2013.04.18)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3.05.13.~'13.06.12)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경주 패릉석상 및 석주일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패릉리 산17, 611-4
- 지정일 : 2005. 01. 22.

(3) 신청내용

- 「경주 패릉석상 및 석주일괄」을 「경주 원성왕릉 석상 및 석주일괄」로 변경
- 사적 「경주패릉」이 「경주 원성왕릉」으로 지정명칭 변경(2011.07.28.)됨에 따라 관련 보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사적 지정명칭 변경 사유 : 원래 명칭 부여,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 “패릉”의 유래 : 신라 원성왕(725~798)의 능으로 추정되는 이 왕릉은 본래 이곳에 있던 작은 연못에 왕의 유해를 수면 상에 걸어 안장하였다고 하는 속설에 따라 패릉(掛陵)이라 널리 알려져 있다.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2.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에 석축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석축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5.16.)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 (2) 대상문화재 : 예천 용문사 대장전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용문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석축 및 배수로 정비

	1차 신청	현지조사 후
자연석 석축 쌓기	총길이 140m, 높이 0~3.15m, 일부구간 2단	총길이 75.5m, 높이 1.5~3.1m
자연석 배수로 보수	길이 68m, 600×400mm	길이 68m, 600×400mm, 맨홀(1EA) 설치 등
기타	진입로 정비, 석축 후면 부지 성토 및 터고르기	석축 후면 부지 성토

라. 현지조사의견('13.06.04)

- 배수로는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석축 설치는 지형이 안정되지 않은 점과 지형의 변화가 큰 점을 고려하여 석축의 설치구간, 규모, 높이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석축의 설치구간, 규모, 높이를 축소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3.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박○○, 허가사항 변경(2차))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박○○
- (2) 대상문화재 : 경주 마동 삼층석탑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마동 101-2
 - 지 정 일 : 1987. 03. 0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마동 185-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7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대지 내 위치 이동, 연면적 증가)

당초(1차 허가변경)	금 차
건축면적 : 133.08㎡ 건축구조 : 일반목조 / 한식골기와잇기 건물높이 : 6m	건축면적 : 138.05㎡ (+4.97㎡) 건축구조 : 일반목조 / 한식골기와잇기 건물높이 : 6.3m (용마루 높이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경주시) 의견

-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1구역(보존구역)에 속하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3909 (2012.07.13) 현상변경 허가 통지, 931(2013.02.27) 허가사항 변경허가 통지를 받은 바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4.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김○○, 2차)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3.21.) : 부결
 - 건물 규모가 커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 : 경주 마동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마동 101-2, 101-3
 - 지정일 : 1987. 03. 0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마동 106-1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10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1차 신청	금 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361.43m ² (720.62m ²)	351.08m ² (710.27m ²)	-10.35m ² (-10.35m ²)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한식골기와잇기	철근콘크리트조 / 한식골기와잇기	동일
건물높이	지하 1층, 지상2층(다락층 포함), 7.98m	지하 1층, 지상2층(다락층 포함), 7.98m	동일
건물 폭	1개동 42m	2개동 20.1m + 12.6m	지상층 분리
주변정비	옹벽 설치(H:3.5~4.0m)	기존 자연석축 활용	

라. 지방자치단체(경주시) 의견

- 신청지는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1구역(보존구역)에 위치하며, 2013년 2월에 현상변경허가 불허 통지를 받은 바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건물 규모가 커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5. 경주 울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울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경주 울동 마애여래삼존입상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두대안길 6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울동 1085-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301㎡
 - 건축면적(연면적) : 67.54㎡(67.54㎡)
 - 건축구조 : 조적조/아스팔트형글 지붕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6.14m

라. 지방자치단체(경주시) 의견

-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1구역(보존구역)에 속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진입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차폐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7명, 부결 2명

6. 임실 진구사지 석등 주변 불상 이전 및 보호각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임실군 소재 보물 「임실 진구사지 석등」 주변에 임실용암리사지석조비로자나불상을 이전하여 보호각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불상을 이전하고 보호각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임실군수
- (2) 대상문화재 : 임실 진구사지 석등
 - 소재지 : 전북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734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76-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7m 이격
 - 사업내용 : 불상 이전 및 보호각 설치
 - 이전대상 : 시도유형문화재 제82호 임실용암리사지석조비로자나불상
 - 소재지(지정일) : 전북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76-1 (1977. 12. 31.)
 - 소유자 : 임실군(공유)
 - 건축면적(연면적) : 33.0m²(29.7m²)
 - 건축구조 : 한식 목구조
 - 층수 : 지상 1층

라. 지방자치단체(임실군) 의견

-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허가되었으므로 현상변경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2분과(유형문화재), '13.05.03) 의견

- 조건부 가결-본래 인법당 위치에 보호각으로 이전 건립

바. 현지조사의견('13.05.31)

- 현재 불상이 모셔져 있는 건물은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함. 다만, 이전 신청지는 친구사지의 중심전각 위치로 유적 훼손의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으므로 보호각 신축 위치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보호각 신축 위치나 형태 등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7.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주변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산시 소재 보물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불굴사
- (2) 대상문화재 :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산55-9
 - 지정일 : 1965. 09. 0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10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90m 이격
 -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8.18㎡(18.18㎡)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한식토기와잇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 높이 4.18m

라. 지방자치단체(경산시) 의견

- 불굴사 경내 화장실을 신축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8.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부지 내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부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부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사항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예천농업협동조합
- (2) 대상문화재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3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99-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8m 이격
 - 사업내용 : 부지 내 도로 개설
 - 도로면적 : 4,022㎡ 십(十)자형 도로
 - 도로 가로 거리 : 121m, 너비 : 8m
 - 도로 세로 거리 : 78m, 너비 : 8~9m
 - 기타 : 콘크리트 포장 및 L형 옹벽식 측구, 집수정 등

라. 지방자치단체(예천군) 의견

- 도로부지는 발굴이 이루어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화재청으로 진달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8명, 원안가결 1명

9.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한천고향의강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에 한천고향의강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천변 정비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예천군수
- (2) 대상문화재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3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50m 이격
 - 사업내용 : 한천고향의강 정비
 - 기존 옹벽 철거 후 자연석 쌓기(L=788m, 734m)
 - 기존 콘크리트 보 철거 후 자연형 어도 설치(L=94m, B=31m)
 - 웅비마당(10,979㎡) 및 돛자리마당(8,244㎡) 조성, 잔디블록(6,492㎡) 식재
 - 한천 중앙 음악분수 설치

라. 지방자치단체(예천군) 의견

- 현상변경기준안의 1구역에 해당함으로 문화재청으로 진달하고자 함.

마. 발굴제도와 의견('13.01.09)

- 지표조사에서 유구,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별도의 보존대책은 불필요함.

바. 현지조사의견('13.06.04)

- 기존의 콘크리트 옹벽과 보를 철거하고 자연석으로 정비하면서 기타 주변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지와외 사이에는 제방이 지나가고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0. 예천 동본리 삼층석탑 주변 한천고향의강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동본리 삼층석탑」 주변에 한천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천변 정비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예천군수
- (2) 대상문화재 : 예천 동본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4-4
 - 지정일 : 1965. 07. 1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88-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0m 이격
 - 사업내용 : 한천고향의강 정비
 - 기존 옹벽 철거 후 자연석 쌓기(L=722m)
 - 징검여울 설치(L=43m, B=8m)
 - 도효자마당(8,702㎡), 잔디블록(5,074㎡)

라. 지방자치단체(예천군) 의견

- 현상변경 기준안의 1구역(원지형보존지역)에 위치하므로 문화재청으로 진달하고자 함.

마. 발굴제도과 의견('13.01.09)

- 지표조사에서 유구,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별도의 보존대책은 불필요함.

바. 현지조사의견('13.06.04)

- 기존의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고 자연석으로 정비하면서 기타 주변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지와외 사이에는 제방이 지나가고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1.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다세대건물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보물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에 다세대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다세대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5m(1층)이하 및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1층)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719-5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1333-70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55m 이격
 - 사업내용 : 다세대주택(2동 18세대) 신축
 - 대지면적 : 1,180㎡
 - 건축면적(연면적) : 가동 231.06㎡(532.84㎡) 나동 223.26㎡(659.04㎡)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4층 / 15.7m

라. 지방자치단체(청도군) 의견

- 신청위치는 석탑에서 약192m 이격되어 있으며 현상변경기준안 제2구역에 풍각면 도심지역에 속하므로 다세대 주택건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12.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5.16) : 부결
 - 원지형 보존지역이고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 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139-2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197-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43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950.0㎡
 - 건축면적(연면적) : 150.0㎡(150.0㎡)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5.06m
- 대지전면 둔덕 조성 및 차폐수목 식재 (※1차 신청과 변경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안동시) 의견

- 신청지는 당해 문화재에서 150m정도 이격된 남서쪽에 위치하며, 표고차는 문화재보다 7m정도 높은 곳으로 대지를 일부 절토하여 전면이 1m정도 높이의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 차폐수목을 식재하여 신축건물이 당해 문화재 보존 및 주건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재신청합니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둔덕의 규격과 차폐수목의 규격, 종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3.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군 소재 보물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원지형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영양 현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401
 - 지정일 : 1977. 08. 2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281-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75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628m²
 - 건축면적(연면적) : 99.74m² (99.74m²)
 - 건축구조 : 목조 위 아스팔트형글릿기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 6m

라. 지방자치단체(영양군) 의견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610호) 현리 삼층석탑 주변에 지상1층 규모의 단독주택 (99.74m²)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4. 부안 개암사 대응전 주변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보물 「부안 개암사 대응전」 주변 숙박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숙박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부안 개암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1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숙박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건축면적(연면적) : 127m²(127m²)
 - 건축구조 : 시멘트블록조 위 슬레이트
 - 층수 : 지상 1층

라. 지방자치단체(부안군) 의견

- 이 토지 주변으로는 농지 및 일반음식점 등이 상당수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건에 대하여 부안 개암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지역 인근에 있어 그동안 인근 주민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15.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금장실 개축 및 주변정비

가. 제안사항

대구시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에 금장실을 개축하고 주변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금장실을 개축하고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원지형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대구 동화사 대웅전
 - 소재지 : 대구 동구 팔공산로 201길 41
 - 지정일 : 2008. 04.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동구 도학동 35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40m 이격
 - 사업내용 : 금장실 개축, 자연석축 및 토석담장 설치
 - 건축면적 : 3,227.55m² (기존 +141.57m²) ㄱ자형, 전면 5칸, 우측 4칸, 좌측 2칸
 - 연면적 : 4,477.89m² (기존 +189.75m²)
 - 건축구조 : 한식목조
 - 주변정비 : 사주문 개축 및 신축, 자연석축(총L=83.8m, H=1~1.5m), 토석담장(총L=174.7m, H=1.2m) 설치

라. 지방자치단체(동구청) 의견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진달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16. 청도 석빙고 주변 청도읍성 내 관아 건물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보물 「청도 석빙고」 주변 청도읍성 내 관아 건물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관아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5m(1층)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및 시도기념물 보호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청도군수
- (2) 대상문화재 : 청도 석빙고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교길 7(동천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억만고(곡물 창고) 건립
 - 사업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127번지 (동문지 읍성내 남측)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0m 이격
 - 고증자료 : 오산지, 오산군지, 영남 청도읍지 등
 - 건축면적(연면적) : 82.62㎡ (82.62㎡)
 - 건축구조 : 한식목조

- 고마청(사신이나 진상물 운반에 필요한 말 담당) 건립
 - 사업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73번지외 1(동문지 읍성내 북측)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7m 이격
 - 고증자료 : 경기감영도(보물 제1394호) 병풍, 여지도서, 청도군지 등
 - 건축면적(연면적) : 47.39m² (47.39m²)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5량가 민도리 홑처마 팔작지붕

라. 지방자치단체(청도군) 의견

- 청도읍성 보수 복원계획에 따라 토지보상 완료된 지역에 관아건축물을 건립하여 읍성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청도읍성 복원·정비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8명

17.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보물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원지형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108-1
 - 지정일 : 1980. 09. 1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11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2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550m²
 - 건축면적(연면적) : 90m² (90m²)
 - 건축구조 : 조적조(황토벽돌) 위 시멘트 기와잇기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 4.9m
 - 기타 : 정화조(5인용) 설치

라. 지방자치단체(청도군) 의견

- 주택건립 위치는 석탑 뒤편 야산 너머이므로 문화재 주변에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18. 서울 흥인지문 주변 숙박시설 건립(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흥인지문」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002년 건조물분과 심의결과 : 가결

- 지하 3층, 지상 8층(높이 33.5m), 건축면적 3,022.30㎡, 판매 및 업무시설

※ 2003년 건조물분과 심의(허가사항 변경) 결과 : 가결

- 지하 4층, 지상 7층(높이 33.5m), 건축면적 3,054.9㎡, 판매 및 업무시설

※ '11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허가사항 변경) : 조건부 가결

- 지하 6층, 지상 10층(높이 34.7~35.9m), 건축면적 2,290.00㎡, 숙박시설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주)동승

(2) 대상문화재 : 서울 흥인지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 지정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89-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43.9m

○ 사업내용 : 숙박시설 건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5,146.10m ²	변경 없음.	
건축면적	2,290.00m ²	2,322.14m ²	증 32.14m ²
연 면 적	42,306.00m ²	41,804.29m ²	감 501.71m ²
규 모	지하 6층, 지상 10층	변경 없음.	
최고높이	35.9m	변경 없음.	

○ 주요변경 내용 : 종로 4·5가 지구단위 계획 세부사항 변경에 따른 조치임.

- 입면변경 : 객실부분 창호 후레임 위치 및 크기 변경
- 옥외시설 : 지하철 8번, 9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및 엘리베이터 위치 변경 등, 보행자 동선 변경에 따라 조경계획 조정 등

라. 지방자치단체(종로구) 의견

- 신축계획안 변경에 따라 입면 및 공개공지 조성계획, 지상구조물 변경,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해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조경계획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9.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정밀안전진단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의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는 사항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중앙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57호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57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당해문화재와 인접
 - 사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 조사 내용 : 3차원 스캔 및 변위·변형 조사, 정밀훼손도 평가, 초음파 탐사, 동적특성평가, 구조 해석 등
 - 가설구조물 설치

라. 지방자치단체(종로구) 의견

- 국보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정밀진단을 시행하고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고건축 및 석탑, 보존과학, 구조 등 관계전문가 등으로 기술지도단을 구성·운영하여 정밀안전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20.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에서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 122번지
 - 지정일 : 1978. 03.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428번지 1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9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건립
 - 대지면적 : 822㎡
 - 건축면적(연면적) : 130.08㎡(265.66㎡)
 - 1동(단독주택, 지상 2층) : 130.08㎡, 2동(주차장, 지하 1층) : 73.54㎡
 - 건축구조 : 목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2층 / 6.0m

라. 지방자치단체(강화군) 의견

- 위 신청지는 1구역으로 약290m 이격되어 있음.
- 단독주택을 건립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마. 현지조사의견('13.06.10)

- 본 건은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구역에서 약 290m 이격된 부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에는 기 건립되어 있는 주택이 다수 있음.
- 신청부지는 석조여래입상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으나, 신청부지의 주변에 주로 1층 건물들이 건립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이므로 주변 상황에 맞게 1층으로 조정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건물 규모가 커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21.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주택단지 조성(2차)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13.05.16) : 부결
 - 신청지가 원지형 보존지역이며 또한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보나미엔비전
- (2) 대상문화재 :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 122번지
 - 지정일 : 1978. 03.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 78번지 외 8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90m 이격
 - 사업내용 : 주택단지 조성

- 건축구조 : 목조

	1차	금차	비고
대지면적	21,576m ²	21,576m ²	
건축면적	3,839.58m ²	2,547.20m ²	감 1,292.38m ²
연면적	4,447.08m ²	2,952.20m ²	감 2,505.12m ²
건립 동수	44동(근린생활시설 14동, 주택 30동)	32동(근린생활시설 13동, 주택 19동)	감 12동

- 건축물 유형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층수(높이)	비고
A형	77.81m ²	98.06m ²	주택	2층(7.605m)	
B형	77m ²	77m ²	근생(소매점, 사무실)	1층(5.225m)	

라. 지방자치단체(강화군) 의견

- 위 신청지는 1구역(원지형보존)으로 약290m 이격되어 있음.
- 신청지는 문화재 오른쪽 임야지역으로 임목으로 인해 문화재가 보이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주변의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주택 밀도를 낮추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22.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물류창고 건립(2차)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에 물류창고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물류창고를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4구역(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에 위치하나, 공통사항 3m이상의 옹벽 설치에 해당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13.05.16) : 부결
 -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2리 산19
 - 지정일 : 2001. 09.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70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50m 이격

○ 사업내용 : 물류창고 건립

	1차	금차	비고
대지면적	12,814m ²	변경없음	
건축면적	4,960m ²	변경없음	
연면적	9,920m ²	변경없음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조	변경없음	
층수 및 높이	지하 1층, 지상 1층 / 24.5m	지하 1층, 지상 1층 / 23m	

※ 경관저해를 최소화하고자 옹벽과 건물사이 공간을 확대하여 수목설치

라. 지방자치단체(파주시) 의견

- 기준안 4구역(도시계획조례의거 처리)에 창고 신축하는 건으로, 최대 17m 절토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23.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전○○, 2차)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주택)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13.05.16)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
- (2) 대상문화재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나주시 삼도동 1385번지 12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8m 이격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주택) 건립

	1차	금차	비고
대지면적	732㎡	변경없음	
건축면적	145.8㎡	변경없음	

	1차	금차	비고
연면적	291.6m ²	변경없음	
건축구조	일반철골조	변경없음	
층수 및 높이	지상 2층, 9.235m	지상 2층, 6m	

라. 지방자치단체(나주시) 의견

- 위 사업부지와 문화재와의 사이에 소매점 1동이 위치하며 문화재의 경관 보존을 위해 금번 건축계획상 높이를 옆 소매점과 동일하게 맞춤.
- 위 사업내용은 기 현상변경허가신청결과 불허된 사항 중 높이를 조정하였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24.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농업용 창고(하우스) 건립(이○○)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에 농업용 창고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농업용 창고를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나주시 삼도동 864-4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내 임.
 - 사업내용 : 농업용 창고(하우스) 건립
 - 대지면적 : 301㎡
 - 건축면적 : 240㎡
 - 건축구조 : 강구조(하우스)
 - 최고높이 : 4m

라. 지방자치단체(나주시) 의견

- 사업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며 금번 사업은 토지소유자가 농업 자재 보관용 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나주천 정비사업으로 창고가 철거되어 본인이 최근 매입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매입시까지만 임시로 설치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25. 순천 정혜사 대응전 주변 종각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보물 「순천 정혜사 대응전」 주변에 종각을 건립하고자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보호구역에 종각을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정혜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순천 정혜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리 712번지
 - 지정일 : 1984. 11. 3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리 715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종각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12.96㎡(25.92㎡)
 - 건축구조 : 한식목조
 - 건물양식 : 출목이익공, 겹처마, 사모지붕, 막새마감
 - 층수 및 높이 : 지상 2층 / 10.5m

라. 지방자치단체(순천시) 의견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필요.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 형태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26.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보물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산51-1번지
 - 지정일 : 1969. 06.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65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4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건립
 - 대지면적 : 354m²
 - 건축면적 : 74.88m²
 - 건축구조 : 목조, 적벽돌치장쌓기, 아스팔트싱글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5.3m

라. 지방자치단체(구례군) 의견

-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으로 기존 범위내 개축,재축이 가능하나, 신청건은 단독주택 신축으로 주변은 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27.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곡성군 소재 보물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기존 범위내 개·보수 가능”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 소재지 : 전남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2번지
 - 지정일 : 2001. 09.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177-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0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건립
 - 대지면적 : 660㎡
 - 건축면적 : 주택 98.4㎡, 창고 24㎡
 - 건축구조 : 한식목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6.15m

라. 지방자치단체(곡성군) 의견

- 사업부지가 당해 문화재로부터 약 200여m 이격 -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28. 기장 장안사 대응전 주변 불광산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가. 제안사항

부산 기장군 소재 보물 「기장 장안사 대응전」 주변 불광산 근린공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불광산 근린공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기장군수
- (2) 대상문화재 : 기장 장안사 대응전
 - 소재지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6 외 2필지
 - 지정일 : 2012. 08. 0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6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200m
 - 사업내용 : 불광산근린공원 관리사무소
 - 대지면적 : 430m²
 - 건축면적 : 71.59m²
 - 연면적 : 71.59m²
 - 건물높이 : 5.9m(지상 1층)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의 형태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29. 밀양 송진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도로·교량 개설(2차)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보물 「밀양 송진리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도로·교량을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도로·교량 개설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12.11.15) : 부결
 -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밀양 송진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진리 412-1번지
 - 지정일 : 1968. 12. 19.
- (3)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도로·교량 개설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진리 494번지 외 3필지

	1차 신청	금 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628.95㎡(89.85㎡×7개동)	540.54(77.22㎡×7개동)	-88.41㎡ (각 -12.63㎡)
건축구조	경량철골조	조적조/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건물높이	지상 1층, 6.2m	지상 1층, 5.45m	-0.75m

- 진입도로 개설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진리 360번지 외 3필지

	1차 신청	금 차	비고
길이(폭)	160m (4m)	8.5m (6m)	-151.5m(+2m)
포장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동일

- 교량 설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진리 1096

- 철근콘크리트조, 길이(10m), 폭(6m), 높이(3m), 면적(60㎡)

라. 의결사항

○ 부결

- 여러 동의 건물이 신축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30.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동창기미 만세공원 재조성 사업

가. 제안사항

강원 홍천군 소재 보물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동창기미 만세공원 재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동창기미 만세공원 재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홍천군수
- (2) 대상문화재 :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등
 - 소재지 :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7-1번지 외 3필지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동창기미 만세공원 재조성
 - 사업위치 :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92번지 외 6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 175m 이격
 - 사업내용
 - 광장포장A=1,155.0m² / 상수도 Φ 50mm, L=144.0m / 하수도 Φ 200mm, L=48.0m / 화장실 A=58.98m² / 기존 파고라 철거 및 개축 / 기존 화장실 철거 / 기념비 도색 및 마감 / 화강석 경계석 및 계단 설치 / 집수정 및 수로관 설치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화장실의 규모와 형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31. 충주 고구려비 주변 김치공장 관련 저온창고 건립

가. 제안사항

충북 충주시 소재 국보 「충주 고구려비」 주변 김치공장 관련 저온창고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김치공장 관련 저온창고 건립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식회사 동심
- (2) 대상문화재 : 충주 고구려비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입석 280-11번지
 - 지정일 : 1981. 03. 18.
- (3) 신청내용 : 김치공장 관련 저온창고 건립
 -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31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 190m 이격
 - 사업내용
 - 경량철골조
 - 대지면적 : 3,820㎡
 - 건축면적 : 488.48㎡
 - 높이 : 10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32. 합천 반야사지 원경왕사비 이건 사업

가. 제안사항

경남 합천군 소재 보물 「합천 반야사지 원경왕사비」 이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합천 반야사지 원경왕사비 이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해인사
- (2) 대상문화재 : 합천 반야사지 원경왕사비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합천 반야사지 원경왕사비 이건
 - 기존위치 : 해인사 길상탑(보물 제1242호) 및 종합안내판 옆
 - 이건위치 : 성철대종사사리탑 부근
 - ※ 해인사경내 주진입로인 아스팔트포장 도로 우측편에 있는 성철대종사사리탑 하단 비림 부지의 우측편 위치

라. 지방자치단체(합천군) 의견

- 원경왕사비 비신의 재질이 점판암으로 오랜 세월로 인하여 재질이 연약하여 비석 이전시 훼손이 우려되며, 도로개설을 위하여 보물을 이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해인사 길상탑(보물 제1252호)과 연결하여 도로개설시 차량진동 및 경관저해(대경목 제거)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비석의 이전 위치가 구석지고 외져 있고 성철스님 등을 비롯한 고승들의 사리탑비 구역 내에 위치하여 부도군과 보호각이 조화롭지 못하여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신중히 판단 필요.

마. 현지조사의견('13.06.10)

- 본 건은 해인사 일주문에서 경내로 들어가는 기존 진입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원경왕사비를 이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기존 도로는 해인사 경내와 인접하여 우회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원경왕사비의 상태는 비신 하부가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이전할 경우 추가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왕사비를 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비를 이전할 경우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33.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소재 보물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96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86-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86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기허가	금 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본동 111.96㎡(111.96㎡)	본동 122.97㎡(122.97㎡) / 부속동(대문) 22.68㎡	총 +33.69㎡
건축구조	일반목구조, 기와마감	일반목구조, 기와마감	동일
층수 및 최고높이	지상1층 / 6.58m	지상1층 / 6.58m	동일
기타		담장설치 L=129.07m	추가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3-06-034

34. 경주 양동 향단 주변정비사업(안채 복원) 검토

가. 제안사항

201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양동 향단」 주변 안채 복원 계획을 검토 받고자 합니다.

나. 제안사유

-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경주 양동 향단」 주변 안채 복원 계획을 검토 받고자 함.
- ※ '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1.04.29) : 보류
 - 유구조사를 선행하고, 고증자료 확인 및 세계유산분과의 부의 후 재검토
- ※ '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1.10.20) : 부결
 - 향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유구가 확인된 사당 등을 우선 복원함
 - 안채 복원은 추가 발굴하여 증언자, 관계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결정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경주 양동 향단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35
 - 지정일 : 1964. 11. 14.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3. 12월(2011년 명사이월, 2012년 사고이월)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향단 안채(정침)를 복원 정비한다.
 - 향단 사당 및 별묘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3) 설계 내용

- 위치 : 향단 뒤편 북동쪽
- 면적 : 54.72m² 역 ㄱ자형 (전면 6칸, 좌측면 4칸, 우측면 2칸)
- 양식 : 1고주 5량가+3량가, 민도리, 원기둥+각기둥, 맞배+팔작

(4) 추진 현황

- 향단 복원 민원 제기('10.02.08. 민원인 ○○○)
- 자문회의 개최('10.09.02.)
 - 정침과 사당은 실존했던 것으로 사료되나 지형이 많이 변경되어 고증자료가 부족함. 다만 사당은 옛 대지가 대체로 잘 남아있음.
- 발굴조사 시행('11.07.05.~20.) 및 전문가 검토회의('11.07.14.)
 - 현 조사로는 안채건물이 있었다고 추정하기에 어려움.
- 추가 발굴조사 시행('12.02.27.~03.27.) 및 전문가 검토회의('12.03.27.)
 - 향단 북쪽에서 건물지(안채추정)와 시굴구역에서 사당지가 확인됨.
- 설계승인 요청('12.12.04.) 및 조건부 설계승인('12.12.07.)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연내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람.(사고이월 필요)
 - 평면계획 등 고증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전문가 자문 후 시행.
- 안채 복원 토지관련 자료 제출('13.05.13.) : 토지승낙서(소유자 ○○○)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 정침을 복원하기 위하여 선행한 유구조사 결과 드러난 유구로 볼 때 평면 계획 등에 대한 건축적 내용의 추정에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발굴유구와 계획평면이 상이하므로 추가 고증 및 관련 분과위원 자문회의 등을 거쳐 추후에 재심의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35. 서울 숭례문 장소사용 심의 검토(전 국민 참여 독도사랑 프로젝트 플래시몹 촬영)

가. 제안사항

숭례문광장 앞 “전 국민 참여 독도사랑 프로젝트 플래시몹” 촬영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안)” 및 “공능원 관람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검토 대상임.
 - 촬영 참가 예상인원이 500명 이상(주최측 추산)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success media
- (2) 대상문화재 : 서울 숭례문
 -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9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주최 : 한국재능기부봉사단(KTDC) / 주관 : success media
 - 촬영내용 : 숭례문광장 『전 국민 참여 나라사랑 프로젝트』 플래시몹(군무)
 - 촬영일시 : '13.06.29(토), 16:50 ~ 17:30(약 40분)
 - 촬영장소 : 숭례문 및 앞 광장
 - 방송장비
 - 촬영장비 : 방송용카메라 10여대(소니 EX3 full HD기종)
 - 음향장비 : 소음향 1세트, 무소음 이동형 발전기
 - 참석인원 : 약 500명 ~ 600명(주최측 추산)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과 관람객들의 안전 등 사업계획이 미비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36. 서울 숭례문 장소사용 심의 검토(숭례문 아트워크 프로젝트 촬영)

가. 제안사항

숭례문 광장 앞 “숭례문 아트워크 프로젝트” 촬영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안)” 및 “공능원 관람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검토 대상임.
 - 대형장비(초대형 천막)반입, 공개제한 지역 및 공개제한 시간에서의 촬영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artbiz
- (2) 대상문화재 : 서울 숭례문
 -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9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촬영일시 : '13.07.28(일), 02:00 ~ 09:00 (7시간)
 - 촬영장소 : 숭례문 및 앞 광장
 - 동원장비 : 카메라 명 : Sinar P3 (4x5inch Film Camera),
Canon 5D Mark3, Canon 1Ds Mark3
50톤 크레인 4대
 - 촬영인원 : 스텝 등 20명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안전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송례문관리소와 세부사항을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작업진행계획서

1. 프로젝트 명 : "승례문(崇禮門), 예(禮)를 높이다."

2. 일 시: 2013. 7. 28 02:00 ~ 09:00 (우천시 8. 4 연기)

3. 장 소 : 승례문

4. 진 행 : 승례문 사진촬영 / 이○○ (사진작가)

5. 작업진행 계획

1) 동원장비 : 카메라 명 : Sinar P3 (4x5inch Film Camera),
Canon 5D Mark3, Canon 1Ds Mark3
50톤 크레인 4대

2) 작업예정인원 : 펜스 안 - 작가 포함 촬영 스태프 7명, 진행보조 2명
펜스 밖 - 건축가 포함 설치스태프 20명,교통안내요원 10명

3) 진행방법

▣ 승례문 뒤쪽 펜스 밖 라운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4군데에 크레인을 설치한다.

▣ 왼쪽 크레인을 1번으로 하여 오른쪽 끝 크레인을 4번으로 한다.

▣ 2,3번 크레인이 캔버스 스크린을 들어올린다.

▣ 1,4번 크레인이 양쪽에서 스크린을 당긴다.

▣ 완성된 스크린을 배경으로 작가는 승례문 앞쪽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3-06-037

37. 2013년도 추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2013년도 추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동산문화재 주변정비사업 포함)을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추진 예정인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동산문화재 주변정비사업 포함)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대상문화재 :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등 46건(붙임 참조)
- 사업기간 : 2013. 6월 ~ 12월

(2)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집행

(3) 행정사항

- 2013년도 추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심의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고자 함.
- 사업추진 중 중요사항 발생시에는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접수 7명, 기권 1명

붙 임. 2013년도 추가 국고보조사업 현황 1부.

[붙임]

2013년도 추가 국고보조사업 현황

연번	소재지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1	서울 종로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유물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413,000	177,000	590,000
2	대전	보물 제209호 대전 회덕 동춘당	정자건립 및 수목식재	140,000	60,000	200,000
3	강원 인제	보물 제1182호 백담사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만해교육관및기념관단청 만해당내부정비공사및지하방수	385,000	165,000	550,000
4	강원 평창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문수전배면석축및배수로정비 수각기단보수	105,000	45,000	150,000
5	충북 옥천	보물 제1338호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석탑해체복원	105,000	45,000	150,000
6	충북 제천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토지매입	280,000	120,000	400,000
7	충북 청원	보물 제613호 신숙주초상	건물 및 부지 정비	98,000	42,000	140,000
8	충북 청원	보물 제511호 청원 계산리 오층 석탑	주변 배수로정비	21,000	9,000	30,000
9	충북 청주	보물 제985호 청주 용화사 석조 불상군	배수로 및 담장	210,000	90,000	300,000
10	충북 충주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부대시설정비	127,500	297,500	425,000
11	충남 공주	보물 제1293호 공주 계룡산 중악단	중악단대문간채지붕보수및벽체, 출입문등정비	84,000	36,000	120,000
12	충남 공주	보물 제1719호 공주 동학사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동학사 염화실 해체보수 및 부 속채 건립	350,000	150,000	500,000
13	충남 논산	보물 제232호 논산 관촉사 석등	지반 잡석다짐 및 마사토 다짐	46,000	19,714	65,714
14	충남 부여	보물 제217호 부여 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중각 하부 석축 정비	70,000	30,000	100,000

연 번	소재 지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15	충남 부여	보물 제184호 부여 장하리 삼층 석탑	배수로 정비	35,000	15,000	50,000
16	충남 아산	보물 제537호 아산 읍내동 당간 지주	발굴조사	70,000	30,000	100,000
17	충남 청양	보물 제181호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화장실 이권	175,000	75,000	250,000
18	전북 남원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복장유물 및 철불 내부 보존처리	42,000	18,000	60,000
19	전북 남원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화장실 보수	70,000	30,000	100,000
20	전북 남원	보물 제42호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배수로 설치	21,000	9,000	30,000
21	전남 고흥	보물 제1307호 고흥 능가사 대웅전	응진당 해체보수	210,000	90,000	300,000
22	전남 광양	보물 제112호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조사전 보수	150,000	64,286	214,286
23	전남 나주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 대성전	동서재 굿기단청	198,800	85,200	284,000
24	전남 나주	보물 제461호 나주 철천리 마애 철불상	선원건립	350,000	150,000	500,000
25	전남 순천	보물 제1549호 순천 송광사 목조 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일괄	응진당보수	140,000	60,000	200,000
26	전남 순천	보물 제804호 순천 정혜사 대웅전	화장실 이전	35,000	15,000	50,000
27	전남 여수	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법왕문 보수	100,000	42,857	142,857
28	전남 여수	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봉황루보수	21,000	9,000	30,000
29	전남 여수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진남관 해체보수	3,000,000	1,300,000	4,300,000
30	전남 장흥	국보 제44호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공양간 개축	420,000	180,000	600,000

연 번	소재 지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31	전남 해남	보물 제320호 해남 대흥사 삼층 석탑	석축정비	210,000	90,000	300,000
32	경북 경주	국보 제31호 경주 첨성대	첨성대 안전진단	70,000	30,000	100,000
33	경북 경주	보물 제66호 경주 석빙고	석빙고 보존처리	70,000	30,000	100,000
34	경북 김천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사천왕문 보수 사천왕상보수및보존처리	297,500	127,500	425,000
35	경북 상주	보물 제922호 상주 남장사 보광전 목각아미타여래설 법상	교남강당 해체보수	210,000	90,000	300,000
36	경북 안동	보물 제1645호 안동 광흥사 동종	문루 지붕 보수	105,000	45,000	150,000
37	경북 영주	보물 제996호 영주 비로사 석조 아미타여래좌상 및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석축 및 담장 정비	224,000	96,000	320,000
38	경북 영주	보물 제681호 영주 흑석사 석조 여래좌상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 시채	245,000	105,000	350,000
39	경북 영천	국보 제14호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영산루 지붕 보수	140,000	60,000	200,000
40	경북 영천	보물 제521호 영천 승렬당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210,000	90,000	300,000
41	경북 영천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석축설치 및 주변정비	56,000	24,000	80,000
42	경북 울진	보물 제1201호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화장실 개축	350,000	150,000	500,000
43	경남 남해	보물 제1446호 남해용문사괘불탱	향적당 적목당 단청	56,000	24,000	80,000
44	경남 밀양	보물 제493호 밀양 무봉사 석조 여래좌상	화장실보수	140,000	60,000	200,000
45	경남 산청	보물 제1112호 산청 대원사 다층 석탑	담장,배수로정비	18,000	7,714	25,714
46	경남 창녕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비각보수	70,000	30,000	100,000

38.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긴급보존사업 추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 각화」 긴급보존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긴급 보존조치가 시급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하여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보존사업(구조안정성 평가 및 매장문화재 조사) 추진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
- 지정일 : 1995. 06. 23.

(2) 검토내용 : 긴급 보존사업 추진계획 보고

- 추진배경
 - 최근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안이 민간·국회 등에서 많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암반 구조현황 등) 부재로 진전된 검토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반구대암각화 정책포럼 회의 시)
- 계획사업
 - 2013년 : 암반 구조안정성 평가·암각화 주변 매장문화재 조사 등
 - ※ 제기되었던 사업 중 3D 정밀계측조사(훼손현황 분석 등), 전통인문환경조사(암각화 외 역사문화자원 조사 등)은 시급성·예산 등 감안 추후 추진예정

○ 주요경과

- '13.04.24 : 반구대 정책포럼 긴급보존분과 제1차 회의
 - 현 상황에서 응급 보존처리는 곤란, 3D 정밀계측조사 필요
 - 암반 구조안전성 평가 추진 필요, 대곡천일대 전통 인문환경조사, 지표·발굴 조사 필요
- '13.05.09 : 반구대 정책포럼 긴급보존분과 제2차 회의
 - 임시제방 등 설치는 준영구 시설이므로 훼손 불가피, 신중한 검토 필요
 - 암각화 관련 선행조사 필수-구조안전성평가, 지반·수리학적 조사 등
- '13.05.30 : 반구대 정책포럼 긴급보존분과 제3차 회의
 - 보존대안 마련을 위한 암각화 관련 기초조사 추진 시급
 - 임시 차수방안도 신중한 접근, 사전테스트 등 추진 필요
- '13.06.16 : 카이네틱 댐 설치 추진협약 체결
 - 내용 : 암각화 보존을 위해 카이네틱 댐 설치추진 검토→지반조사 등 사전 기술조사를 추진하고 국조실이 구성한 기술평가팀 검토수행
 - 추진방식 : 국고보조(문화재청 70%, 울산광역시 30%)
 - 협약자 : 문화재청장, 울산시장, 문화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향후계획 : 우선 사전 기술조사 등을 추진, 설치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추후 재검토 예정

라. 세부 추진계획

(1) 구조안정성 평가

□ 사업개요

○ 목적

- 반구대 암각화 하부 공동부 붕괴위험, 암반의 구조적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추진내용

- 선행조사, 암반 불연속면의 광역적 분포 특성, 구조사면에 대한 안정성, 전체적인 구조안정성 평가

- 사업기간 : 2013. 6월 ~12월
- 예 산 : 1.5억원
- 수 행 : 울산광역시 연구용역 발주(우리 청 지도감독 참여)

□ 추진절차

-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연구추진
- 용역결과물 문화재청 제출

□ 추진일정 (※ 울산시 지방비 확보 등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연구용역 기본계획수립 (2013. 6월)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방법, 과업지시서 작성
- 연구용역 발주 (2013. 7월)
-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013. 8월)
- 연구용역 착수 (2013. 9월)
- 연구용역 수행 (2013. 9월~12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2013. 10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성과물 제출 (2013. 12월)

(2) 정밀 매장문화재 조사

□ 사업개요

- 목적
 - 반구대 암각화 주변 일대 매장문화재 잔존여부 확인
 - 반구대 암각화 모암에서 퇴락된 석재 유무 및 추가 암각화 존재여부 확인
- 추진내용
 - 반구대 암각화 상·하류 정밀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유구 잔존 의심지역 지중레이다(GPR) 탐사
 - 현지조사 후 수중 지표조사 실시 여부 판단(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협조)
 - 매장문화재 분포 예상지역 시굴조사
- 조사대상 : 반구대 암각화 반경 3km 이내 대곡천 일원

- 사업기간 : 2013. 6월~10월(지표조사 및 지중레이다 탐사)
- 수 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 추진절차

- 장마 전 본류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장마 이후 주변 일대 정밀 지표조사 실시
- 지중레이다 탐사 가능지역 설정, 착수
- 지표조사 및 지중레이다 탐사 결과를 분석, 매장문화재 잔존 의심지역 시굴 조사 실시

□ 추진일정

- 문헌조사
 - 문화유적분포지도, 발굴조사보고서 등 기 조사자료 정리·종합
- 현지조사(6.17~6.18)
 - 대곡천 일대 지표조사 범위 검토
 - 지중레이다(GPR) 탐사 가능 여부 검토
 - 수중 지표조사 실시 여부 판단
 - 조사수행방법 검토
- 정밀 지표조사
 - 장마 후 녹음기를 피해 실시 예정(9~10월)
- (시)발굴조사
 - 정밀 지표조사 후 (시)발굴조사 대상 선정 후 착수 예정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